

[일련번호 : 59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품질시험계획서 미수립 및 품질관리자 미배치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5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계획(이하 “품질관리계획” 이라 한다)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(이하 “품질시험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,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은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,

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,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,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5와 같으며 초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다.

대상공사	공사규모	시험·검사장비	시험실 규모	건설기술인
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	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	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·검사장비	18㎡ 이상	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

따라서, 발주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의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조치하고, 품질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별도로 배치하여 품질관리 소홀을 방지하고, 건설공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재시공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적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‘2024년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(연간단가)’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실착공일 기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 관련 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,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이를 현장대리인이 겸직하여 품질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,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○○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